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망에서 자살과 연관된 정보 유통 시 주의사항 권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75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망에서 자살과 연관된 정보 유통 시 주의사항 권고	2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75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9. 6.

(3) 회 부 일 : 2024. 9.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II. 검토의견

1. 정보통신망에서 자살과 연관된 정보 유통 시 주의사항 권고

-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자살과 연관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정보를 유통시킨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u><신설></u>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⑨ (생략)	<u>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 ----- ----- ----- ----- -----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로 정의¹⁾하고, 정보통신망을 통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 그러나 자살유발정보로서 포섭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법이 지켜 내려고 하는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문화의 확산과 같은 가치³⁾에 위협이 되는 정보가 얼마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가리키는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는 그 의미와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정보가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중립적 혹은 예방적 맥락 속에서도 쓰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 판단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의 권고를 실제로 수행할 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비록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사용했다 하여 주의사항을 안내받게 되는 이용자가 이 안내를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있어서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기본정책)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재적 조치나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보건복지부는 자살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가 주의사항이 안내되어야 할 범주의 것인지 판별하기 위한 기준의 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이나 차단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임⁴⁾.

문 의 처

02)6788-5498

4) 관련하여 현행법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자살위험자 중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협조 의무 정도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